

# 정유회사의 저유소 부지에 대한 부동산관련법 규정완화협조의뢰 요청 건

1.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금년부터 시행되는 **부동산관련법**(종합토지세, 토지초과이득세법, 택지소유상한법)에 의하면 정유 회사의 저유소용부지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고율의 세율 적용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성격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과중한 세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과세 주무부서에 **건의문**을 제출하였는 바, 저유소부지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의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— 아 래 —

## 1. 종합토지세

- 주무부서 : 내무부 지방세제국 시군세과
- 과세내용 : 저유소부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업무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(0.3~2%)이 적용되므로 종합토지세 부담이 정유회사별로 약 3~6배 증가하게 됨.
- 건의사항 : 저유소부지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‘...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’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4(분리과세대상토지)에 추가하여 분리과세(0.3%)하여야 함.

- 첨부서류 : 내부장관에 대한 전의 공문사본.  
지방세법 관련조문 사본.  
세정신문 보도자료 사본.

## 2. 토지초과 이득세

- 주무부서 : 재무부 세제국 재산세제과
- 과세내용 : 저유소부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면 첨부검토서와 같이 저유소부지의 상당부분이 기준면적초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됨.
- 건의사항 :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대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(유사한 토지)에 석유사업법에 의한 정유회사의 저유소용부지를 추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.
- 첨부서류 : 재무부 장관에 대한 전의공문 사본.  
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조문 사본  
저유소부지에 대한 검토서 사본

## \*참고사항

- 택지소유상한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공공시설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음.
- 첨부서류 : 택지소유상한법 관련 조문 사본.

1990. 4. 16  
대한석유협회